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드론을 활용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드론교통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도심항공정책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하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토교통부 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99.99. ~ 99. 9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제11항에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지자체 일반산단 지정 및 변경 협의업무
19. 인·허가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및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20.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제6항 중 “항공보안과”를 “항공보안과·도심항공정책팀”으로 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장은”을 “도심항공정책팀장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장은 각각”으로 한다.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9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20항까지로 하고,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도심항공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드론을 이용한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교통(이하 이 항에서 “드론교통”이라 한다)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드론교통 체계의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드론교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
4. 드론교통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집행 및 관리

5. 드론교통 체계와 다른 교통 체계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드론교통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드론교통 관련 전문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8. 드론교통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

별표 7의2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1”을 “60”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3”을 “64”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645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3조 중 “2022년”을 “2024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도심항공정책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도심항공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도심항공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첨단항공과장이 분장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6조의2(미래드론교통담당관) ①</u> <u>「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u> <u>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u> <u>항에 따라 제2차관 밑에 미래드</u> <u>론교통담당관 1명을 둔다.</u> <u>②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은 서기</u> <u>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u> <u>다.</u> <u>③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은 다음</u> <u>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u> <u>한다.</u> <u>1. 드론을 이용한 사람 또는 화</u> <u>물의 운송 교통(이하 이 항에</u> <u>서 “드론교통”이라 한다) 활성</u> <u>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u> <u>2. 드론교통 체계의 구축·관리</u> <u>에 관한 사항</u> <u>3. 드론교통 관련 법령의 제·</u> <u>개정 및 제도 개선</u> <u>4. 드론교통 관련 연구개발 사</u> <u>업의 집행 및 관리</u> <u>5. 드론교통 체계와 다른 교통</u> <u>체계의 연계에 관한 사항</u> <u>6. 드론교통 관련 산업의 육성</u>	<u><삭 제></u>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드론교통 관련 전문가 협의

체 운영에 관한 사항

8. 드론교통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

제7조(국토도시실) ① ~ ⑩ (생략)

⑪ 산업입지정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17.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⑫ ~ ⑳ (생략)

제12조(항공정책실) ① ~ ⑤ (생략)

⑥ 항공정책실에 항공정책과 · 첨단항공과 · 국제항공과 · 항공산업과 · 항공보안과 · 항공안전정책과 · 항공운항과 · 항공기술과 · 항공교통과 ·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 공항정책과 · 공항안전환경과 및 항행시설과

제7조(국토도시실)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

1. ~ 17. (현행과 같음)

18. 지자체 일반산단 지정 및 변경 협의업무

19. 인·허가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및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20.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⑫ ~ ㉑ (현행과 같음)

제12조(항공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항공보안과 · 도심항공정책팀-----

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 ⑪ (생략)

<신설>

도심항공정책팀장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장은 각각

--.

⑦ ~ ⑪ (현행과 같음)

⑫ 도심항공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드론을 이용한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교통(이하 이 항에서 “드론교통”이라 한다)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드론교통 체계의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드론교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
4. 드론교통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집행 및 관리
5. 드론교통 체계와 다른 교통 체계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드론교통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드론교통 관련 전문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8. 드론교통 관련 국제기구 및

⑫ ~ ⑰ (생략)

국토교통부령 제645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은 2022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2의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2명은 2022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단체와의 협력

⑬ ~ ⑳ (현행 제12항부터 제19항까지와 같음)

국토교통부령 제645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 2024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삭 제>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은
2022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명으로 본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7의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02</u>	<u>1,002</u>	-
•	•	•	
•	•	•	
일반직 계	<u>992</u>	<u>992</u>	-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61</u>	<u>60</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63</u>	<u>64</u>	+1
•	•	•	
•	•	•	